

의안번호	2204348
의 퇴 인	김원이 의원
회 답 일	2024. 11. 28.
추 계 번 호	24A383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2 신설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16조제3항제3호 ¹⁾ 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 ²⁾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3조의2 신설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안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정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총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이하 “전략산업등”이라 한다)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 고려될 수 있는 지역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총생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을 추가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된 특화단지(이하 “재생에너지 활용 우수 특화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개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활용 우수 특화단지에 인상된 보조율을 적용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현재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원에 대한 보조율은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 특화단지의 성격(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지역(비수도권·수도권) 및 투자규모에 따라 보조율을 15~30% 사이에서 상이하게 적용³⁾
- 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재생에너지 활용 우수 특화단지의 수에 특화단지별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와 보조율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해당 특화단지로 지정될 지역의 수와 지원 단가 및 보조율 인상 수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16조제3항제3호⁴⁾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용 우수 특화단지 지정 요건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기반시설 지원 보조율

	특화단지 투자규모별 구간*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구간)	100조원 이상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30%	25%
(中 구간)	10~100조원	3~30조원	1~10조원	25%	20%
(下 구간)	10조원 미만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20%	15%

1. 특화단지 투자규모는 부처·전문가 평가 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적용
2. 바이오 등 다른 분야의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보조율은 추후 관련절차 등을 거쳐 추가 반영할 계획임
3. 용수공급시설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비용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보조율 내의 금액에서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4) 안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 일부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해당 특화단지로 지정될 지역의 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또한, 현재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 12개 중 2025년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인 특화단지는 4개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으며, 예산 투입 규모 역시 조성 필요한 인프라 등 특화단지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여 재생에너지 활용 우수 특화단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도에 예산 지원을 계획 중인 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총 12개 중 청주, 포항, 새만금 및 울산 이차전지특화단지 4개로, 각 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은 약 34억원부터 108억원까지 설치하려는 인프라의 규모에 따라 상이함

- * [참고자료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 * [참고자료 2]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원 사업 현황

- 재생에너지 활용 우수 특화단지에 적용될 보조율의 경우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현재 일반적인 특화단지에 적용되고 있는 수준(15~30%)보다 높은 보조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조율의 상한이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없어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재생에너지 활용 우수 특화단지의 지정과 국고보조율 인상 적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정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총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구분	지역		주요 내용	선도기업 투자규모 (기간)
반도체	1	용인·평택	메모리 세계1위 수성, 시스템 점유율 10%로 확대	562.0조원(∼'42)
	2	구미	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	4.7조원(∼'26)
	소 계			566.7조원
이차 전지	3	청주	리튬황·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	4.2조원(∼'26)
	4	포항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年 70만톤 이상)	12.1조원(∼'27)
	5	새만금	핵심광물가공(전구체 등)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	6.4조원(∼'27)
	6	울산	이차전지 포트폴리오(LFP, 전고체 등) 다변화 거점	7.4조원(∼'30)
	소 계			30.1조원
디스플레이	7	천안·아산	OLED 초격차 확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	17.2조원(∼'26)
바이오	8	인천경기(시흥)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25.7조원(∼'35)
	9	대전(유성)	혁신신약 R&D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	6.6조원(∼'37)
	10	강원(춘천홍천)	AI 기반 신약개발 및 중소형 CDMO 거점	2.1조원(∼'40)
	11	전남(화순)	국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생산 거점,	1.2조원(∼'33)
	12	경북(안동포항)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	0.6조원(∼'33)
	소 계			36.3조원

자료: 아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1.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2023.7.20.
2. “5개 바이오 특화단지를 통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 2024.6.27.

[참고자료 2]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세부사업코드)	구분	2025년도 예산안 ¹⁾	지원 비율 ²⁾	비고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 지원구축(3171-364)	-	25,213	-	
청주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출연	3,593	25	청주 오창2산단 내 전력공급시설 (4km) 설치 비용 지원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출연	7,130	30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내 염 처리수 지하관로(약 11km) 설치 비용 지원
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출연	10,780	25	새만금국가산단 내 전력공급시설 (11.2km) 설치 비용 지원
울산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	출연	3,430	25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시설 (1.9km) 설치 비용 지원
기획평가관리비	출연	280	-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전담 업무 수행 비용

주: 1) 2024년 관련 예산 없음(2025년 순증). 정부안 기준

2) 지원 비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율(15~30%) 적용
자료: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